[양식 제4호]

양 신 입 서 고 녀 웍 익)

[양/	식 제 <i>4</i>	[호]												ماران ww.klac.or.kr// على الماران		
(입 (냥 년	신	고 ^월	서 일)					읽고 <i>7</i> 로 표시						
Ť	7분			양	부					ે	<u> </u>	모				
① 양 친	성명	한글 (성)	/ (명)	(명) 본(한자))		3)	/ (명)		본(한자)				
		한자 (성)	/ (명)	(명) 출생연월일		길		3)	/ (명)	3	출생연월일				
		주민등록번호			_			주민등록번호 -								
	등 록 기준지 주소															
② 양 자	성명	한글	(성)	/ (1	명) 본(한자		-)			주민등록번호		_				
		한자	- (성)	/ (1	평)	성 별 [1]님		· 2 cd	출	생 연 월	릴 일					
	 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
	주	소														
(3) 9	③양자의 친생부모		성명	성명 -			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			_						
			성명	!	등록기준 7											
<u></u>	타사항					1 2 6	기인포									
	양허가		+					치-	<u></u> 가일	<u>عا-</u>		년 ·	<u></u> 월	일		
<u> </u>	부							"	1 =			<u>'</u>		 또는 서명		
⑥ 동 의	모	- 0 0 성명												10 또는 서명		
				 남음하는	 심판 법	워				 심판일:	자	ــــــا				
의 자					· 없는 시					· - -	·					
	양자	의 배	우자			① 또	는 서명	주민	등호	투번호			-			
⑦ 신고인	양부	-		①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											
	양모		(6					① 또는	서명	전 호 이메일						
	양지	-					(① 또는	서명	전 호 이메일	}-					
	법정대리역	,	1	부			(① 또는 	서명	전 호 이메일						
		2]	부모	모) 또는		전 호 이메일 전 호						
			[2]후	견인			(① 또는	서명	이메일	_					
87	⑧제출인		성	명				주민	등톨	투번호			_			

^{**}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주민등록번호: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.
 -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
- ⑤란: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.
- ⑥란: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 -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.
 -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⑦란: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며,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- ⑧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부서류

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(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 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).
- 3. 입양동의서 1부(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,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 서의 "동의자"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.
- 4.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
-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(예시 : 주민등록 말소· 거주불명 등본)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
 -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: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,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-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**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